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15. 12.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2. 12. 11.)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 (안 제2조제3호, 제4장의 제목, 제 16조 및 같은 조의 제목, 제18조 및 같은 조 제1호)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변경(안 제18조의 제목)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로 변경(안 제18조 제2호)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특별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인”이라 함은 시장·상점”을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점포”라 함은”을 ““점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을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성동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 “등록”을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편의시설”이라 함은”을 “”편의시설”이란”으로, “비가리개”를 “비 가리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상인회”라 함은”을 “”상인회”란”으로, “및 규칙”을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시장관리자”라 함은”을 “”시장관리자”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가리개”를 “비 가리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객지원센터,”를 “고객지원센터”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제16

조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하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원 또는 보조받기 위하여 제19조에 의하여”를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를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환급금”을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또는 규정에 의하여”를 “또는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를 “시설현대화사업으로”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제38조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40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4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0000년 00월 0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00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00 부터 적용한다.

제5조(00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A의 사무는 B가 승계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특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	제2조(정의) ----- ----- 뜻은 -----,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 ----- ----- ----- ----- 2. “점포”란 ----- ----- ----- -----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신고-----  
-----.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  
-----

--"이란 -----  
-----

6. "편의시설"이란 -----  
-----

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

----- 비  
가리개-----

7. "상인회"란 -----  
-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  
규칙"이라 한다) -----

---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  
-----.

8. "시장관리자"란 -----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  
-----

----- 제  
8조에 따른 -----

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u>의하여</u> 구청장으 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 다.	----- ----- <u>따라</u>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u>의 한다</u>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 ----- <u>따</u> ----- ----- <u>르</u>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비가리개</u> : 내구연수 10년 이 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 치하여야 하며, 건축·소방·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u>비 가리개</u> -----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 정시장은 <u>영 제2조제1항</u> 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 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 ----- 「 <u>전통시장 및 상점</u> ----- <u>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u> ----- <u>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2 ----- <u>조제1항</u>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 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 는 시설과 부지) ① ----- -----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u>및 제4 호의</u> <u>규정에 의한</u>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1.----- ----- <u>및 제4</u> ----- <u>호에 따른</u> ----- -----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한 공동창고, <u>고객지원센터</u> ,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 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2. ----- ----- <u>고객지원센터</u>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 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 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 축물	5. <u>그 밖에</u> ----- ----- ----- -----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4. (생략)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경우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  
-----  
-----  
-----  
-----  
-----  
--- 신고하여야 -----.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  
----- 개  
설-----.

1. ----- 신고-----
2. ----- 개설신고서-----
3. 4.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  
-----

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성동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받기 위하여 제19조에 의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

-----  
----- 따르  
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  
-----  
--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  
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 범위에서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  
----- 부가가치세 환급금 -----  
-----  
-----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생략)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  
----- 해당 -----  
-----  
----- 범위 -----  
----- 에서 -----.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  
-----

1. 2. (생략)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1. 2. (현행과 같음)  
3. ----- 또는 규정에 따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생략)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  
----- 따

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1. 2. (생략)  
③ · ④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관리) ① -----  
-----  
-----  
-----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  
-----  
----- 따른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  
-----

<p>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의한다.</p> <p>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p> <p>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3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p>	<p>----- ----- 따 를 ----- ----- -----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 따 른다.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 ----- ----- ----- 서식의 ----- ----- ----- ② ----- ----- ----- 별지 제2호서식 의 ----- ----- 제38조(강제징수) ----- ----- ----- ----- 경우 -----</p>
---	---

<p>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40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u>서울특별시 성동구세 부과징수 규칙</u>을 준용한다.</p> <p>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 제40조(지방세의 준용) ----- ----- 「서울특별 시 성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 칙」----- 제41조(시행규칙) ----- 시행 에 ----- -----</p>
--	--